

제2746호
2020. 6. 24.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보 전 산 과 장 김 건 태
전화: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고 시

제2020-76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2
 제2020-77호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3
 제2020-78호 : 남대문로5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정정고시 4

● 공 고

제2020-478호 : 남산동2가 18-12일원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고 6
 제2020-483호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9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0-76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구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도 로 명 고시일	도 로 명 부여기준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44-1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7	2020. 6. 24.	충무로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 4. 22	조선시대 명장 이순신의 시호 인용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등·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0-77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7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44-1	2020. 6. 24	건물 말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도로명주소가 새로이 부여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0-78호

남대문로5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정정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61호(2011.12.1.)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5-90호(2015.11.19.)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6-8호(2016.1.27.)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6-71호(2016.7.20.)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7-122호(2017.12.28.)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0-18호(2020.3.4.)로 사업시행변경인가,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0-71호(2020.6.10.)로 공사완료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0-75호(2020.06.17.)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경미한 변경) 고시된 남대문로5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내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정정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3396-5775)에 비치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6월 2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남대문로5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변경없음)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6.7.20.(변경없음)

마.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1)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변경없음)

2)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가) 분양대상자 및 분양면적(변경없음)

나) 체비지 시설

<정정 전>

변경전	변경후
토지 5,907.482㎡, 건물 88,526.2639㎡	토지 6,604.3㎡, 건물 91,033.81㎡

<정정 후>

변경전	변경후
토지 5,907.482㎡, 건물 88,526.2639㎡	토지 6,064.3㎡, 건물 91,033.81㎡

다) 보류지 시설(변경없음)

3)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변경없음)

바. 관계서류 : 생략(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 비치서류와 같음)

※ 정정사유 : 서울특별시 중구청 고시 제2020-75호(2020.06.17.)로 고시된 내용중 체비지 시설에서 토지면적 착오기재에 대한 정정임.

공 고

● 중구공고 제2020-478호

-남산동2가 18-1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내용에 대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토지등소유자·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 공람의견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2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명칭 : 남산동 2가 18-12일원 자율주택정비사업

나. 구역위치 : 중구 남산동2가 18-1 외1필지
(18-1,18-12)

다. 구역면적 : 320.70㎡

라. 사업시행자 : 주민합의체 3인(대표 : 박윤근)

마. 건축계획

위치	대지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용도	기타
18-1	144.50	56.46	149.39	지상3층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
18-12	176.20	59.95	148.64	지상3층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2. 공람 및 의견서 제출기한 : 2020.6.24.~2020.7.9.

3. 공람장소 : 중구청 주택과(☎02-3396-5723)

4.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관계도서 열람시간 : 평일 09시~18시)

5.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공람의견서 직접 제출 또는 증구청 주택과로 우편제출
 - ※ 우편주소 : (우04558)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주택과
 - ※ 우편에 의한 공람의견서는 공람마감일 우체국 소인분에 한함

붙임 공람의견서 서식 1부. 끝.

공 랑 의 견 서

공고명	남산동2가 18-1일원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람기간 (제출기간)	2020.6.24.~2020.7.9.			
소유물건	건 물			
	토 지			
의견 제출인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공 랑 의 견				

2020. 06. .

증구청장 귀하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483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 관내 아래 지상 토지 소유자로부터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이 있어 확인한 바, 현존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이 있어「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처리하고,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이 불가능하여「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방법 : 중구청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2. 공시송달 공고 및 의견제출 기한 : 2020.06.24. ~ 2020.07.08.
3. 말소처리 일자 : 2020.06.23.
4. 공시송달 내용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부000(주)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철거·멸실되었음에도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음, 토지소유자의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지번	층수	연면적	구조	용도		
	을지로1가 42	지상2층	52.62㎡	목조	주택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음에도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대장을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체 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바.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중구청	부서명	도심재생과	담당자	정철화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전화번호	3396-5756
		전자우편 주소	rladudwo0830@junggu.seoul.kr			팩스번호	3396-8783

5. 유의사항
 - 가. 위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에 의견이 있는 분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6. 24.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 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 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
 - 연 락 처 : 02-3396-5782, 모사전송(FAX) 02-3396-8783